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,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경기도, 시청자미디어재단과『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』체결(2018. 10. 24.)

○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관계법령

○「방송법」제90조의 2 (시청자미디어재단)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「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」제5조 (운영비 등의 분담)

4. 주요내용

1)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

○ 위　　치 :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

○ 규　　모 : 4,222㎡ (지상3층/지하1층)

○ 운영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 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연기관)

○ 운 영 비 : 1,572,340천원 [국비 943,404천원 (60%), 시비 628,936천원 (40%)]

○ 주요시설 : 디지털미디어교육실, 드론촬영체험관, 편집실, 사무실 등

○ 주요사업

- 미디어활용교육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교육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
2) 2027년 출연 계획

○ 출연 대상 : 시청자미디어재단

○ 출연 금액 : 557,756천원

-「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」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비 중 60%는 방통위, 40%는 남양주시가 각각 분담

- 시 분담금 628,936천원 중 파견인력 1명 인건비 71,180천원를 제외한 금액

《 2027년 센터 예산(안) 》

(단위 : 천원)

구　분	인건비 (A)	경상비 (B)	운영비 (A+B)	비 고
총 소요액	925,340	647,000	1,572,340	
국비 분담	711,800	231,604	943,404	운영비의 60%
지자체 분담	213,540	415,396	628,936	운영비의 40%

5. 기대효과

○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활용 교육 운영 및 방송제작 시설·장비 제공 등을 통해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와 미디어 복지 실현

○ 1인 미디어시대 수도권 미디어 허브 역할로 남양주시 위상 정립

6. 향후일정

○ 2026. 10 : 부의안건 제출

○ 2026. 12 : 2027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본예산 편성

7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업무협약서 : 붙임2

나. 관련부서 : 홍보담당관

8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7년도 운영에 필요한 남양주시 분담금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활용교육과 콘텐츠 제작교육, 방송제작 시설·장비 이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,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.

○ 다만,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, 현재 운영비는 국비 60%, 남양주시 40%로 분담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없는 상황임. 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 분담액 전부를 부담하거나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, 센터의 광역적 이용 특성을 고려한 운영비 분담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이에 센터 회원과 이용자의 거주지역별 현황 및 사업별 이용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, 타 지역의 운영비 분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 범위와 수혜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 분담비율을 마련하고, 경기도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.

○ 아울러, 출연금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와 시설·장비 이용실적, 미디어 소외계층 지원성과 등을 점검하고,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1 **업무협약서**

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협약

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시청자미디어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이 협력하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,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·지원한다.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한다.
③ 재단은 미디어교육·시청자 방송제작·소외계층 방송접근 지원 등 센터 사업 관리·운영한다.

제3조(설립공간) ① 남양주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 내 문화공원 일원에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신축, 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② 사용료 산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.

제4조(센터 설립 실무협의회의 구성)
① 센터 설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재단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 실무협의회는 센터 설립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.
②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체결 이외의 전문기관을 실무협의회에 추가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비 등의 분담)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(이때, 운영비는 신규 시설장비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)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%, 남양주시가 40% 각 분담하되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6조(관리 및 운영) ① 재단은 센터 관리·운영하며,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, 일부를 남양주시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다.
②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시 재단은 정부의 권장정책에 따라 경기 거주도민을 포함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에 노력한다.

제7조 (발전협의회 구성) ① 재단은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.
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, 교육기관, 미디어 관련 학계·단체·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방송통신위원회·경기도·남양주시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. 이때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50%를 추천한다.

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·정책·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,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내부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해석)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9조(분쟁)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별로 아래에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0월 24일

남양주시

시장 조 광 한

방송통신위원회

부위원장 허 욱

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

도지사 이 재 명

시청자미디어재단

이사장 신 태 섭

붙임2 관계법령

☑「방송법」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~ ⑥ (생 략)
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☑「지방재정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

제20조(보수지급기관) ①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,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.
③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,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.